

건설정책리뷰 2008-04

단품슬라이딩제도 실태 및 개선 방향

- 단품물가조정제도 -

이종광 · 박승국

2008. 11.



대한건설정책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onstruction Policy

♣ 단품슬라이딩 제도 운영 현황

- 단품슬라이딩 제도는 특정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대비한 공사비 조정 제도이며 정식명칭은 ‘단품물가조정제도’로 단일품목에 대한 물가조정을 의미한다.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시행된 2008년 5월 1일 이후 조달청에 접수된 사례는 2008년 7월 20일 현재 단 2건에 그치고 있다.

♣ 단품슬라이딩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

- 조사결과 단품슬라이딩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일반(80% 응답)과 전문업체(65% 응답) 전문가 및 공무원(66% 응답) 모두 공통적으로 원도급사가 단품슬라이딩 보다는 총액에스칼레이션으로 계약금 조정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단품슬라이딩 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 현재의 단품슬라이딩 제도는 1~2개 품목 때문에 단품 조정을 받는 것 보다는 90일을 기다렸다가 총액에스칼레이션에 의해 계약금 조정을 받는 것이 원도급사에게 조정 총금액이 높은 상황이며 이것이 단품슬라이딩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1~2개 품목의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한 하도급자의 경영악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개선방향

- 입찰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보통 2개월~1년간의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물가조정제도의 물가변동 산정 시점을 현행 계약시점에서 입찰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특정자재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단품슬라이딩의 요건인 가격 변동률 기준을 현행 15%에서 10%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가격변동률 산정 기준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일반소비재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의 평균 물가지수를 의미하므로 건설자재의 정확한 가격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자재의 가격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물가지수 개발이 필요하다.
- 물가상승에 의한 가격변동률의 증명이 어렵고 단품슬라이딩과 총액에스칼레이션과 중복부분의 공제방법의 복잡성과 신청 조건과 절차의 복잡함이 단품슬라이딩제도 활성화의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단품슬라이딩제도의 엄격성과 경직성 완화가 필요하다.
- 특정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단품슬라이딩과 총액에스칼레이션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원도급사보다는 하도급사에게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1. 서 론

(1) 단품슬라이딩 제도 운영 현황

- 2008년 7월 10일 현재 업계에 따르면 주자재인 건설 용 후판값이 불과 1년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급격히 상승해 업체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건설신문 2008년 8월11일)
- 단품슬라이딩 제도는 이러한 특정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대비한 공사비 조정제도이며 정식명칭은 ‘단품물가조정제도’로 단일품목에 대한 물가조정을 의미한다.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시행된 2008년 5월 1일 이후 조달청에 접수된 사례는 2008년 7월 20일 현재 단 2건에 그치고 있다.
- 단품슬라이딩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안되더라도 가격이 15% 이상 급격히 오른 자재가 있으면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단품 조정을 받게 되면 공사 계약후 90일이 지나 생산자 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이미 올려 받은 원자재 품목은 제외하고 다른 원자재만을 가지고 지수 계산을 하게 된다.
- 따라서, 만일 단품 조정을 받은 원자재 품목을 제외하고 기타 원자재의 생산자물가지수 변동이 3%에 미치

지 못할 경우 건설사는 다른 원자재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 현재의 단품슬라이딩 제도는 1~2개 품목 때문에 단품 조정을 받는것 보다는 90일을 기다렸다가 전체 품목에서 계약금 조정을 받는 편이 이익이 되는 구조이다. 이경우, 원도급자는 전체 품목에서 대하여 계약금 조정을 받는 것이 유리하나, 특정 원자재가 상승한 업종의 전문건설업체는 단품 조정을 받지 못하여 경영상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와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및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이유로 공사금액의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을 증액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원도급자가 추가공사금액을 하도급자에 증액하는 경우 모든 하도급사에게 증액 조정된 조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향이 높아, 특정 원자재 품목이 상승한 업종의 전문건설업체는 적정한 추가공사금액을 조정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방법

- 연구방법으로는 건설공사비 조정과 관련된 문헌, 연구 보고서 등을 고찰하였으며 최근의 전문건설업체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 총 41개 업체와 공무원 등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반건설업체 13명, 전문건설업체 20명, 공무원 8명 등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2. 단품슬라이딩 제도

2.1 개념

- 단품슬라이딩제이란 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특정규격 자재가격이 급격히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공업체(건설사)에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 가격 증감율이 15%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8. 5. 1. 시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신설 2006. 12. 29.)

(‘08. 5. 15. 시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신설 2007. 9. 20.)

2.2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

-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자재를 말하며 규격이 있는 경우는 규격별 모든 자재를 말한다.
-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한다.

- ‘이형철근’의 경우 D10, D13, D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슬라이딩을 할 수 있다.

2.3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취지

-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으나, 아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총액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정 자재를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하도급자들(계약상대자가 당해 자재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이 기존 계약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기가 곤란하여 총액에스컬레이션 전에 특정자재에 대해서만 가격상승분을 보정해주는 제도이다.

2.4 단품슬라이딩제도의 운영 방법

(1) 단품슬라이딩의 적용 대상

- 2006. 12. 29.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도입되었으므로, 동 시행령이 시행되는 2006. 12. 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대상이었으나, 2006. 12. 29. 이전 입찰공고하고 계약체결한 계약중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사계약에도 단품물가조정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

2008. 10. 13.에 입법예고하였다.

(2)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에스컬레이션 조정 방법

-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에스컬레이션까지에 대해서는 9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총액에 대한 90일 요건이 충족되면 조정이 가능하다.
- 단품에 대해서는 단품슬라이딩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단품 조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총액에스컬레이션에서 공제한다.
- 현행 물가변동에 따른 총액에스컬레이션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008년 11월 1일 기획재정부는 물가변동이 5%이상(물품구매는 10%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시행하였다.

(3) 총액에스컬레이션과 단품슬라이딩이 동시에 충족될 때
처리방법

- 계약상대자가 총액에스컬레이션을 신청하고, 하도급자가 단품슬라이딩을 요청한 경우에 문제가 되며 계약담

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총액에스컬레이션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단품슬라이딩은 총액에스컬레이션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액에스컬레이션을 우선 하고 있다

3. 단품슬라이딩 제도 실태 조사 결과

(1)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인식도

- 단품슬라이딩 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조사대상 중 78%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건설업체의 인식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건설업체와 공무원의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단품슬라이딩 제도(단품물가조정 제도) 인식도

구분	알고있다				모른다			
	일반	전문	공무원	전체	일반	전문	공무원	전체
구성비 (%)	92.3	75.0	62.5	78.0	7.7	25.0	37.5	22.0

(2) 공사비 조정 경험

- 공사비 조정 경험에 대한 응답에는 일반건설업체의 83.8%가 조정 경험이 있으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조사대상 전문가의 70.6%가 공사비 조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공사비 조정을 받은 경험에 대해 전문건설업체의 경

우(70.6%)가 일반건설업체(83.8%)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의 공사비 물가조정 제도의 혜택이 일반건설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체에게 까지 미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한다.

-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면담조사결과 일반건설업체에게 공사비 조정을 신청할 경우 공사완료후 사후 정산 약속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수였으며, 이마저도 일반건설업체들이 공사완료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후속공사의 수주기회 제공등을 빌미로 공사비 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심지어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비 조정 내용과 금액을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발주자로부터 단품슬라이딩 또는 총액에스컬레이션에 의해 공사비 조정 받은 경험(일반건설업자)

구분	공사비 조정 받은 적이 없다	총액에스컬레이션에 의해 조정 받은 공사경험이 있다	단품슬라이딩에 의해 조정 받은 공사경험이 있다
구성비 (%)	16.7	83.3	0.0

<표 3> 원도급자로부터 단품슬라이딩 또는 총액에스컬레이션에 의해 공사비 조정 받은 경험(전문건설업자)

구분	공사비 조정 받은 적이 없다	총액에스컬레이션에 의해 조정 받은 공사경험이 있다	단품슬라이딩에 의해 조정 받은 공사경험이 있다
구성비 (%)	29.4	70.6	0.0

(3) 물가조정제도의 물가변동 합리적 물가변동 기준시점

-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비 물가 조정제도의 물가 변동의 기산일인 기준시점에 대하여 계약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의 합리성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0.0%가 계약시점, 37.5%가 입찰시점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60%의 응답자가 계약시점이 아닌 입찰시점 이전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 입찰시점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건설공사비의 변동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찰일로부터 계약 체결시까지 2개월이 소요되며, 일괄 입찰의 경우 6개월이 소요된다. 턴키 발주 공사등 대형 공사는 발주로부터 적격 업체의 선정에 이르기까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기간이 각각 3~4개월이 소요되며, 발주기관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및 확정하는데 2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입찰에서 계약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설계가 완료된

지 1~2년이 경과된 후에 입찰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

- 현행과 같이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산정할 경우 입찰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 기산의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상승분을 건설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공사비 물가조정제도의 물가변동 산정시점을 입찰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현행 공사비 물가조정제도의 물가변동의 합리적 기준시점

[일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구분	설계완료시점	입찰 30일전	입찰 시점	계약 시점	구분	설계완료시점	입찰 30일전	입찰 시점	계약 시점
구성비 (%)	23.1	15.4	46.2	15.4	구성비 (%)	5.3	5.3	42.1	47.4

[공무원]					[전체]				
구분	설계완료시점	입찰 30일전	입찰 시점	계약 시점	구분	설계완료시점	입찰 30일전	입찰 시점	계약 시점
구성비 (%)	25.0	0.0	12.5	62.5	구성비 (%)	15.0	7.5	37.5	40.0

(4) 물가변동 산정기준

- 현행 공사비 물가 조정제도의 물가변동 산정기준은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

하고 있다. 이의 합리성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7.5%가 생산자물가지수, 32.5%가 소비자물가지수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자의 63.5%가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다른 물가지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생산자물가지수는 건설자재 부분으로 특화되어 있는 지수가 아니며, 전자제품이나 일반 소비재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의 평균 물가지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응하여 건설공사비의 상승 요인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 이러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문제점으로 인해 건설공사비 지수 또는 별도의 건설물가지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다수 조사되었다. 따라서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자재 가격의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물가지수의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물가변동의 적절한 산정기준

구분		생산자 물가지수	건설공사비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별도 건설 물가지수 필요
구성 비 (%)	일반	61.5	15.4	7.7	15.4
	전문	15.8	15.8	52.6	15.8
	공무원	50.0	25.0	25.0	0.0
	전체	37.5	17.5	32.5	12.5

(5) 증액조정된 공사비 지급방법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와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증액공사비의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대로 증액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지급한다는 응답이 일반건설업자는 63.6%, 법령의 규정대로 원도급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전문건설업체는 60.0%로 조사되었다.
- 조사결과와 같이 아직도 많은 경우 하도급사에게 증액된 공사비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8.5%), 이는 최근과 같은 특정 원자재값이 급등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를 사용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급등한 비율에 따라 증액공사비가 지급되지 않고, 해당현장의 모든 하도급사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그 부담을 한개의 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총액에스컬레이션으로 공사금액조정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증액된 공사금액을 지급하는 방법

구분	모든 하도급사에게 증액된 조정률에 따라 일률적지급			증액된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의 고저에 따라 하도급사별로 차등지급		
	일반	전문	전체	일반	전문	전체
구성비 (%)	36.4	40.0	38.5	63.6	60.0	61.5

(6) 합리적 가격변동률

- 현재 단품슬라이딩제도는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안되더라도 가격변동률이 15% 이상 급격히 오른 자재가 있으면 해당 자재가 오른 만큼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 합리성에 대한 조사결과 적절한 가격변동률이 10%라고 응답한 비율이 48.7%로 과반수에 가까웠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4.3%가 적절한 가격변동률로 10%이하를 응답하였다. 따라서 현재 단품슬라이딩 조정 기준가격변동률인 15%는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단품슬라이딩이 적용되는 특정규격자재의 적절한 가격변동률

구분		5%	10%	15%	20%이상
구성비 (%)	일반	0.0	76.9	23.1	0.0
	전문	47.4	31.6	15.8	5.3
	공무원	14.3	42.9	42.9	0.0
	전체	25.6	48.7	23.1	2.6

(7)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엄격성

-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엄격성에 대하여 65.8%가 엄격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물가상승에 의한 가격변동분의 증명이 어렵고 단품슬라이딩과 총액에스칼레이션과 중복부분의 공제방법의 복잡성과 신청 조건과 절차의 엄격성이 주요한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표 8>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한 현행 요건의 엄격성

구분		엄격하다	적절하다	관대하다
구성비 (%)	일반	61.5	38.5	0.0
	전문	73.7	15.8	10.5
	공무원	50.0	50.0	0.0
	전체	65.8	28.9	5.3

(8) 단품슬라이딩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

- 단품슬라이딩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일반(80% 응답)과 전문업체(65% 응답) 전문가 및 공무원(66% 응답) 모두 공통적으로 원도급사가 단품슬라이딩 보다는 총액에스컬레이션으로 계약금 조정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단품슬라이딩 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의 상황에서는 총액에스컬레이션보다 단품슬라이딩에 의한 공사비 조정 총액이 낮은 상황이 주요한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 즉, 특정 자재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90일이 경과한 후 공사전체 금액에 대하여 총액에스컬레이션 조정을 받는 것이 조정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도급사는 단품슬라이딩 조정보다는 총액에스컬레이션에 의한 조정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다.
- 일반과 전문업체 전문가 및 공무원의 공통된 의견으로 단품에스컬레이션 조정 부분과 총액에스컬레이션과의 중복 부분 공제방법이 복잡하고, 단품슬라이딩의 신청 조건 및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을 지적하였다.

[일반건설업체의 의견]

- 원도급사가 유리한 부분이 적으므로 추진하지 않고 발주처의 경우는 신규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선례를 요구하여 조달청 접수시에도 물가 변동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조달청에서는 물가 정보가 아닌 조달 물가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근 수년간 강판의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구매한 자료가 없으므로 기준이 없다고 처리를 회피함)
- 단품슬라이딩 제도가 실질적으로 하도급사에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원도급사보다 하도급사에 적용 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입증해야 하는 등 신청절차가 다소 복잡하며, 더구나 보전받은 금액은 나중에 전체 계약 금액에 대한 총액 조정시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별다른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
- 단품슬라이딩으로 조정받은 품목은 향후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총액 조정시 제외되므로 업무의 번거로움만 있을 뿐 실제 공사비 반영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다.

[전문건설업체의 의견]

- 단품대상과 총액대상이 동시에 적용될시 총액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 물가 상승이 발생할 경우, 총액으로 갈수밖에 없으며 원도급사 입장에서 총액에스컬레이션이

유리하므로 따라서 단품슬라이딩과 총액에스컬레이션을 별도로 계산해야 할 것이다.

- 원도급사의 단품슬라이딩 적용기준 미숙지에 따른 적용 판례 등을 이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 단품슬라이딩 제도 적용을 위한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
- 발주처의 타 현장 적용 사례 및 전례 자료 요구하고 있으며, 원도급사의 적극적이지 못한 대응이 주요한 원인이다.
- 건설업체가 실제 지불하는 자재가격에 크게 못 미치는 조달청의 에스컬레이션 기준 가격이 비현실적이고 총액에스컬레이션과 중복 부분 공제방법이 복잡하며, 2008년의 경우 대부분의 건자재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굳이 단품슬라이딩을 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의 의견]

- 특정 자재 가격만 상승하기보다는 전품목 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총액에스컬레이션과 중복되는 부분이 계산이 복잡함.

4. 강구조물설치 공사현장의 사례 조사

4.1 조사 개요

- 최근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전문건설업의 경영악화 사례를 발굴하고자 강구조설치공사업체 현장의 공사비 조정 내역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업체의 담당 직원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강구조물설치공사는 총 계약금액 1,024,894,400원이며 계약날짜는 2006년 12월 11일 이었다. <표 9>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 공사비는 직접공사비가 약 93% 간접공사비가 약 7%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철강재의 총가격은 직접공사비의 70% 수준이다.

4.2 철강재 가격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가 추정

- 철강재 가격상승에 따른 전체 공사비 증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철강재 가격 상승률을 단품슬라이딩 요건인 특정 원자재 가격 변동률 15%와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 추세에 따른 철강재 가격 상승률 50%와 100%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다른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 간접비는 상승요인 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 추정결과 철강재 가격이 15% 상승시 총공사금액은 9.8% 증가하였으며, 50% 상승시에는 32.6%가 증가하

였고, 100% 상승시에는 65.1%가 상승하였다.

- 따라서 최근과 같이 특정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 원도급자와 발주자로부터 특정가격 인상분에 대한 공사비 증액을 받지 못하면 공사원가에 못 미치는 공사를 수행할 수 밖에 없으며 특정 원자재 가격이 인상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은 악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단품슬라이딩 요건인 특정 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여도 원도급자는 총액에스칼레이션 요건인 전체 공사금액의 3% 가격변동이 발생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총액에스칼레이션을 발주자에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는 단품슬라이딩 신청이 매우 힘들며 따라서 전문건설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 더욱이, 총액에스칼레이션에 의해 공사비 증액을 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비 증액 조정시 절반 정도의 업체가 <표 6>에서 보듯이 증액되는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고 동일한 증액 비율로 일률적으로 지급받고 있어 특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하도급업체는 증액된 공사비에 크게 못 미치는 공사비 조정을 받게 되어 특정 원자재 폭등에 의한 고통을 분담이 아닌 전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된다.

<표 9> 철강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강구조물 하도급 공사의 총 공사금액 증가

공 종	계약시 금액(원)	철강재 가격 15%상승시 금액(원)	증가 비율(%)	철강재 가격 50%상승시 금액(원)	증가 비율(%)	철강재 가격 100%상승시 금액(원)	증가 비율(%)
가. 직접공사비							
1. 철강재가격(H형강)	667,394,560	767,503,744		1,001,091,840		1,334,789,120	
2. 기타 재료비와 노무비등의 제비용	286,026,240	286,026,240		286,026,240		286,026,240	
직접공사비 계	953,420,800	1,053,529,984	110.5	1,287,118,080	135.0	1,620,815,360	170.0
나. 간접공사비							
1.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	2,053,740	2,053,740		2,053,740		2,053,740	
2. 안전관리비	6,312,840	6,312,840		6,312,840		6,312,840	
3. 퇴직공제부금	4,098,200	4,098,200		4,098,200		4,098,200	
4. 고용보험료	5,436,315	5,436,315		5,436,315		5,436,315	
5. 관리비 및 이윤	38,280,195	38,280,195		38,280,195		38,280,195	
6. 국민건강보험료	5,227,220	5,227,220		5,227,220		5,227,220	
7. 국민연금보험료	10,078,100	10,078,100		10,078,100		10,078,100	
간접공사비 계	71,473,600	71,473,600	100.0	71,473,600	100.0	71,473,600	100.0
총 공사금액	1,024,894,400	1,125,003,584	109.8	1,358,591,680	132.6	1,692,288,960	165.1

5. 개선 방향

(1) 물가변동 산정 기준시점의 변경

- 현재 공사비 조정제도의 물가변동 시점은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보통 2개월~6개월간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의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비 상승분을 건설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가조정제도의 물가변동 산정 시점을 입찰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격 변동률 기준의 하향 조정

- 합리적 가격 변동률 기준에 대한 조사결과와 같이 74.3%에 달하는 건설업체들이 현행 15%보다 아래인 10%이하 수준을 응답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현행 15%의 기준은 너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특정 자재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단품슬라이딩의 요건인 가격 변동률 기준을 10%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3) 건설자재의 가격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물가지수 기준의 변경 필요

- 현재 가격변동을 산정 기준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일반 소비재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의 평균 물가지수를 의미하므로 건설자재의 정확한 가격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자재의 가격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물가지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엄격성 및 경직성 완화

-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응답업체의 65%가 제도의 엄격성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물가상승에 의한 가격변동률의 증명이 어렵고 단품슬라이딩과 총액에스컬레이션과 중복부분의 공제방법의 복잡성과 신청 조건과 절차의 복잡함이 주요한 원인이므로 가격변동률의 증명방법과 총액에스컬레이션과의 중복부분 공제방법, 신청절차 등을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전문건설업체에서도 간편하고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조달청에 접수시 물가 변동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조달물가 자료 기준이 아닌 물가

정보자료를 기준으로 구매자료가 없는 특정 원자재의 경우도 가격 변동발생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5) 단품슬라이딩 제도가 실질적으로 하도급사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원도급사보다는 하도급사에게 적용 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단품슬라이딩과 총액에스컬레이션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총액에스컬레이션이 우선이 아닌, 각각의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상황에 맞추어 단품슬라이딩 또는 총액에스컬레이션 신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적정공사 원가에 못미치는 낮은 낙찰율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못한 단품슬라이딩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견실하고 우수한 전문건설업체가 끊임없는 기술개발, 시공전문성과 건설시공 생산성을 향상시켜 견실한 기업 경영을 도모해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이종광, 연구위원(jglee@ricon.re.kr)
- 박승국, 책임연구원(skpark@ricon.re.kr)